#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48

발의연월일: 2021. 9. 14.

발 의 자:정찬민·배준영·서정숙

안병길 • 이종성 • 이주환

임이자・곽상도・지성호

태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법률 제17752호, 2020. 12. 11.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현행 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개인부담금"으로"를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 이 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
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용) ①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	
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	
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	
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	
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	
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	
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	
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	

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 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 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 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 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 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은 "「공무원연금법 "으 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 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 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 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 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 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 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 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 다.

<u>"개인부담금"으로,</u>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
	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
	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
	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